

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년 5월 24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3년 6월 1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3년 7월 21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3년 7월 21일

2. 제안이유
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의 일부개정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「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
등에 관한 조례」 개정
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시 폐기물처리시설의 비용분담, 주변편익시설
운영관리, 주변 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분담 정비(안 제3조~제5조)
- 나.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·관리 정비(안 제6조~제11조)
- 다.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정비 등(안 제12조~제26조)

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비용분담, 주변편익시설
운영관리, 주변 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
하고자 하는 사안으로,
- 안 제15조는 안 제13조 ‘기금의 용도’ 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판단되는바,

‘주변영향지역 지원 등’ 을 규정하는 조항에 맞게 ‘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 제2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’ 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.

- 기존 「김포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」(2007.11.08. 제정)가 있음에도 본 조례안 제5조에 ‘특별회계의 설치 운영’ 이 기재되어 조례의 중복 여부 및 향후 해당 특별회계 내용 개정 필요시 혼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, 기존 조례 폐지 또는 본 조례안 개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.
- 안 제18조제3항 위원회의 구성 부분에서 ‘성별을 고려하여’ 라는 문구는 추상적이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0%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구체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이 미반영된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개정 조례안 제5조제2항 특별회계 관련 중복조항을 고려하여 「김포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」 를 준용하는 것으로 수정하고, 제13조 및 제15조의 내용이 중복조항임을 고려하여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3조에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함.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**수정가결**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10. 주문사항 : 없음

11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수정안 1부.

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 번호 | 제3236호 |
|----------|--------|

제출년월일 2023. 7. 12.
제출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 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 특별회계 관련 중복조항을 고려하여 「김포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」를 준용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.
- 개정 조례안 제13조 및 제15조가 중복조항임을 고려하여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3조에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.
- 개정 조례안 제15조 삭제에 따른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‘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’를 ‘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김포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」를 준용한다.’로 수정 (안 제5조제2항)
- ‘제13조(기금의 용도)’를 ‘제13조(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)’으로 수정 (안 제13조)
- ‘시장은 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·육영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.’를 ‘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은 법 제22조 및 영 제27조에 따른다.’로 수정 (안 제13조제1항)

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- ②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김포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3조의 제목 “(기금의 용도)”를 “(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은 법 제22조 및 영 제27조에 따른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제17조”를 “제16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영 제27조 제1항의 별표3의 지원사업 종류 중 사업구분 4의 그 밖의 사업중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13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호(중전의 제4호) 중 “제25조”를 “제24조”로 한다.

제15조를 삭제하고,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조문대비표

| 전부개정조례안 | 수 정 안 |
|--|--|
| <p>제5조(특별회계의 설치 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납부 금액</p> <p>2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</p> <p>3.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</p> <p>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및 이에 따른 일체의 필요경비에 사용한다.</p> <p>제13조(기금의 용도) ① 시장은 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·육영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이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제17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③ 기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| <p>제5조(특별회계의 설치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김포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」를 준용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 제></p> <p>제13조(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) ①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은 법 제22조 및 영 제27조에 따른다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제16조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영 제27조 제1항의 별표3의 지원사업 종류 중 사업구분 4의 그 밖의 사업중 조례로 정하는</p> |

| | |
|---|---|
|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<u>제15조에 따른 지원사업</u></p> <p>4. <u>제25조에 따라 위촉한 주민 감시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</u> <u>제15조(주변영향지역 지원 등) 제1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영 제27조에 의거 지원할 수 있다.</u> <u>제16조 ~ 제26조 (생 략)</u></p> | <p><u>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3. <u>제24조</u>-----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제15조 ~ 제25조 (현행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와 같음)</u></p> |
|---|---|

